

# 수 원 지 방 법 원

## 제 2 형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06노3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
피 고 인 강\*\* (52 -1), 택시운전기사  
주거 성남시  
항 소 인 피고인  
검 사 강선주  
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고정2743 판결  
판 결 선 고 2008. 5. 7.

### 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한다.

피고인은 무죄.

### 이 유

#### 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사실오인

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

하지만, 장\*\*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데도, 원심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

#### 나. 양형부당

원심의 형량(벌금 50만 원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## 2. 직권판단

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 고지하고,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, 같은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.

그러나 기록에 의하면,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와 답변서에 장\*\*의 부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므로 장\*\*의 기왕증에 대하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,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고, 이후 당심에 이르러 장\*\*의 부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, 그렇다면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,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

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#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

피고인은 2006. 4. 5. 00:55경 경기00바 0000호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\*\*\*\*아파트 앞 사거리를 내대리마을 방면에서 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허\*\* 운전의 경기00무 0000호 쏘렌토 차량 우측 뒷부분을 이 사건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장\*\*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.

#### 이 법원의 판단

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, 허\*\*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, 교통사고보고, 진단서, 견적서,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, 피고인이 2006. 4. 5. 00:55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\*\* 운전의 쏘렌토 차량 우측 뒷부분을 이 사건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,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 조수석에는 장\*\*이 탑승하고 있던 사실, 장\*\*은 사고 당일인 2006. 4. 5. 수지00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및 진단을 받고, 2006. 4. 6.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\*\*정형외과에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(진단서상 기재된 "요추 염좌"는 오기로 보임)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,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위 증거들 및 당심 증인 허\*\*의 법정진술, 각 사실조회회보서(수지00병원 및 \*\*정형외과), 수사보고(증거기록 25쪽)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, 즉, 일반적으로 경추 또는 요추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는 환자의 진술만으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,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차량 운전자인 허\*\*는 사고 당일 하루 용인시 기흥구 00동 소재 00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외에 달리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였던 피고인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작성된 수지00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장\*\*은 교통사고로 인한 "low back pain(허리 통증)"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, 장\*\*은 사고 발생 일주일 전부터 "back pain" 증상이 있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,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장\*\*은 만취 상태로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'빨리 가자'며 횡설수설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당심에서 장\*\*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에 걸쳐 우편 및 전화로 소환하였으나 장\*\*은 출석을 거부하거나 응답을 회피하였고 장\*\*의 진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는 점,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차량들의 파손 부위와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하면,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장\*\*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'상해'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,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\_\_\_\_\_